

〈前號에서 계속〉

II. 상표권의 취득

1. 상표권의 주체

소련에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상표법 제8조의 조항에 따르면, 국영기업, 기관뿐 아니라, 법인의 지위를 갖고 제조와 무역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협동기관 및 기타 사회기관이 갖는다.

소련에서 상표권은 상표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인과 그 법인 및 그들의 양수인들에게 인정될 수 있고, 이 들은 적법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향유한다.

해외에 주소나 거소를 둔 외국인이나 법인들은 소련내에 대리인을 두어야만 한다. 소련에서 상표를 등록출원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법인들의 대리인(변리사 포함)의 역할을 소련연방상공회의소(USSR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내의 V / O "Sojuzpatent"가 맡는다. 상표를 등록출원하려는 소련내국 출원인들은 대리위임없이 직접 "소련 국가 발명 및 발견 위원회 (The USSR State Committee for Inventions and Discoveries)"의 연방심사조사국 (VNIIGPE)에 출원한다.

단체표장은 정관, 설립허가서, 경제조합의 설립에 관한 협약등에 의해 법적인 관계가 인정되는 기업조합(Association of Enterprise)에만 적용이 된다.

단체표장의 권리는 또한 소련의 조합, 기업 및 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제적인 경제기관에도 인정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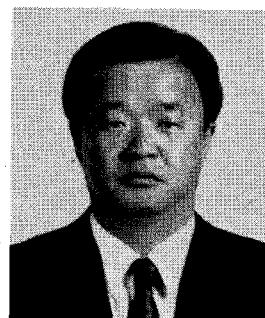
상표권자의 명칭변경은 소련국가 발명 및 발견 위원회에 필히 등록(Mandatory registration)하여야 한다. 등록증에 상표권자의 명칭변경을 하려면 정신으로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될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등록증(원본)

- 관련기업(기관, 협회)의 정관 초본이나 법인 증명

- 관납료 영수증

- 상표소유자의 명칭변경을 입증하는 서류



宋 晚 鎬
〈辨理士〉

目 次

I. 소련상표법상의 상표의 개념

II. 상표권의 취득

III. 상표권과 보호

〈고딕은 이번호, 명조는 지난 및 다음호〉

상표권의 주체가 외국인일 경우는 상표권자의 명칭변경을 입증하는 서류는 법인등기부초본 및 정부기관등이 발급한 명령서 초본등으로 가름한다.

2. 상표등록출원의 요건사항

상표등록출원은 출원인이 상표별로 러시아어로 기재된 출원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성명, 주소, 출원상표의 표장 및 그 표장에 대한 설명, 국제 분류, 그 표장이 등록될 상품 및 서비스의 목록등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여기에 더하여 소련 출원인은 기업, 기관 및 협회의 세분화된 규약을 제출해야 한다. 출원서는 일정한 서식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한다.

출원서의 서식은 소련인의 출원인인 경우와 다르게 외국인이 출원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에 대한 내용과 서명을 한 위임장을 첨가해야 한다.

출원한 표장의 설명(description)은 문자, 도형 및 표장들의 결합체와 같은 모든 유형의 표장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요구된다.

표장에 대한 설명은 그 표장의 내용을 심사관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심사를 용이하게 진행시키도록한다.

외국어로 된 문자 표장의 경우에는 표장의 의미를 러시아어로 음역한 것과 함께 러시아어 번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될 표장에 대한 모든 설명과 의미는 마찬가지로 러시아어로 번역해야 한다.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그 번역과 음역은 소련연방상공회의소 내의 V/O Sojuzpatent에서 대신해 줄 수 있다.

출원서에는 아래에서 나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선등록 상표가 있다면 그것은 등록번호
- 상품의 외형적인 모양을 상표등록출원하는 경우 입체적인 표장의 표시

- 파리조약에 근거 우선권주장 출원의 경우 그 상표가 최초출원된 국가명과 우선권 주장일자.

출원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상표 견본(5cm×5cm) 30매 (인쇄된 것이나 사진 또는 실사용 라벨 등)

- 외국출원인의 경우 소련연방 상공회의소 내의 V/O Sojuzpatent 앞으로 서명된 위임장. (우리나라 출원인의 경우 향후 공증, 인증을 요하지 아니함.)

- 우선권주장 출원의 경우에는 우선권 증명서류

- 판납료 영수증

- 전시회에 사용된 상표의 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 소련국내에서 개최된 개인 전시회의 조직위원회가 발급한 증명서

위에서 언급한 서류에 더하여 단체표장의 등록출원에는 상표의 사용 규정이 첨부되어야 한다.

3. 상표등록출원의 심사

상표등록출원과 등록증 발급에 대한 심사는 연방심사조사국(VNIIGPE)에서 수행되고 심사는 출원한 표장이 상표등록에 관한 상표법상의 요건들을 갖추었는가 확인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상표의 국제등록에 대한 마드리드 조약에 따라, 출원한 상표의 우선권 주장일은 세계지적 소유권기구(WIPO)국제국에서 인정한 국제등록날자가 된다. WIPO의 국제국에서 발행된 국제등록통지서에는 파리조약의 4항에 일치하는 우선권 주장일에 대한것이 포함되어 있다.

소련에서 개최된 개인 전시회나 박람회에 전시된 상품에 사용된 상표의 우선권 주장일은 전시회 개장일이 되며, 이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방심사조사국(VNIIGPE)에 출원을 접수시켜야 한다.

파리조약 우선권주장출원이나 전시회우선권주장출원은 출원서에 그 주장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소련국가 발명 및 발견 위원회는 우선권 주장일을 확정하기 위해 출원인에게 언제 어떤 서류들을 제출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상표법 제 22조에 의하면 출원일은 우편발송일자

로 하고 외국출원인 경우에는 출원서가 소련연방 상공회의소에 의해 연방심사조사국(VNIIGPE)으로 발송된 날자, 즉 소인이 찍힌 날자가 출원일이 된다.

연방심사조사국(VNIIGPE)의 임무는 일차로 방식심사, 즉 제출된 출원서의 완벽성 여부,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의 정확성, 관납료금 납부의 정확성 등을 포함하여 출원서가 정확히 작성되었는가를 1개월 이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로 출원이 심사에 들어 갔음을 출원인에게 알리거나, 정정 및 보정사항, 거절예고 등을 출원인에게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출원은 상표법상의 요건을 출원인이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거절되며 이경우 실질심사는 시작되지 아니한다.

외국출원인에 의해 제출된 출원은 다음의 경우 심사하지 아니하고 출원인에게 반송된다.

- 1) 출원서가 상표법상의 법정요건을 만족시키지 못 했을때
 - 2) 상품 및 서비스의 목록이 없는 경우
 - 3) 출원한 표장의 표시(Representation)이 없는 경우
 - 4) 하나의 출원에 2개 이상의 상표를 포함한 경우
 - 5) 출원서류를 손으로 쓴 경우
 - 6) 출원서가 외국어로 쓰여지고 그것에 대한 번역문 사본이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 7) 상품의 국제분류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의 분류 숫자가 쓰여지지 않은 경우
 - 8) 출원에 대한 관납료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로 출원된 서류
 - 9) 정식으로 작성된 위임장이 없는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심사 착수전 출원인에게 보정지시가 발부된다.
- 1) 출원서상의 출원인의 명칭과 출원서첨부서류상의 출원인명칭이 상이할 때
 - 2) 상품 및 서비스의 목록이 정확하지 않을 때
 - 3) 관납료금 납부액이 부족할 때
 - 4) 법인증명서류가 없을 때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 5) 상표견본의 매수가 부족할 때
 - 6) 상표견본의 규격이 적합치 않거나 품질이 조악할 때
 - 7) 평면상 표장의 방향이 일정하지 아니할 때
 - 8) 색체상표등록출원서에 흑백상표견본 (인쇄된 견본)을 첨부한 경우
 - 9) 출원된 상표의 설명(description)이 없을 때
 - 10) 상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할 출원인의 권리 증명서가 없을 때
- 출원인은 정정 및 보정시기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적어도 VNIIGPE에 의해 요청서가 송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원인이 지정기간내에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한도에서 보정한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 출원인이 보정서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그 출원은 출원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며 연방심사조사국은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VNIIGPE는 출원료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그 출원료는 상품분류(class)의 수에 따라 결정되며 1982년 9월 13일 소련의 각료협의회에서 결정된 요금에 따른다. 즉 기본 1개류 출원 당 60루블, 추가 1개류당 30루블씩의 관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보정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출원번호 통지서가 발급되며 그 통지서에는 출원에 부여된 일련번호, 이것의 우선권 주장일, 국제 분류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 출원인의 주소 및 명칭을 기재한다.

상표의 등록출원과 등록증 발급에 대한 심사는 법률적인 요건사항을 충족시키는 출원서를 VNIIGPE에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행해지게 된다. 그 기간동안에 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공식통지나 거절 이유통지를 받게된다.

필요하다면 VNIIGPE는 관련부처나 기업 및 기관들에게 심사에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상표로 등록출원한 표장들에 대한 사전지식,

공고여부에 관한 전문가적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심사하는 과정 중 출원인에게 추가적인 자료들도 물론 요청할 수 있다.

출원인은 그와 같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요청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 기간동안에 요청한 자료를 출원인이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은 거절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연방심사조사국(VNIIGPE)은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상표출원의 심사결과 다음과 같은 유형의 조치를 취한다.

- 상표출원의 등록사정

- 상표등록의 거절이유를 명시한 거절사정

상표등록사정서가 발급되면 출원인은 등록사정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등록료와 관납료를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소련국가 발명 및 발견 위원회에 제출하면 그 상표는 소련국가상표등록부에 등재되고, 산업의장 및 상표공보에 공고되며, 출원인에게 등록증이 발급된다. 그러나 기간내에 등록료와 공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상표등록은 무효가 된다.

거절사정은 출원서상의 지정상품이나 서어비스의 일부에 대해서도 취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등록사정은 남아있는 상품과 서어비스에 대해서만 취해진다.

상표등록증이 분실되거나 마멸된 경우에 소련국가 발명 및 발견 위원회는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행해 줄 수 있다.

상표등록에 대한 거절사정에 볼복하는 경우 출원인은 거절사정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연방심사조사국의 Control Board에 항고할 수 있다. 이러한 항고청구에 대해 Control Board의 심사관을 항고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재심사한다.

항고 청구에 대한 기각통지를 받은 경우는 기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소련국가 발명 및 발견 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2차불복항고청구를 할 수 있고, 동 위원장이 주재하는 소위원회에서 2차 항고청구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재심사하며 위원장의 결정은 최종심이 된다.

향후 특허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 확정되면 (1990년 9월 예상) 특허법원(Patent Law Court)을 개설할 예정이며, 동법원이 개설되면 최종심은 동법원에 의하여 수행될 것이다.

외국 출원인에게 자주 일어나는 잘못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하다. 외국 출원인들이 흔히 무시하는 것이 출원회사의 명칭의 일치이다. 예를 들어, 출원의뢰 서신에는 회사명이 Co., Ltd. 나 Inc. 와 같은 약자인데 반해 위임장에선 회사명으로 Company, Limited나 Incorporated와 같이 완전한 회사명으로 기입한 경우라면 이러한 회사명칭간의 불일치를 정정해야 한다.

외국 출원이나 외국 출원인의 변리사가 출원 등록 될 상품을 국제 분류표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류하므로써 출원서에 포함된 상품들의 목록에 표시된 분류와 일치하지않게 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이것이 출원을 지연시키고, 심사기간을 연장시키는 요인이 된다.

상표견본의 규격과 품질에 대한 부주의는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실수이다. 소련 국가 발명 및 발견 위원회에서 정한 상표견본의 요건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심사기간을 연장시키는 요인이 된다.

통상, 상공회의소로 보내지는 출원자료들은 출원상표의 설명(description)이 없다. 이경우 그 표장에대해 임의적인 설명을 추가할수도 있으나 이러한 요인이 향후 보정사항이나 심지어는 거절사정의 요인이 된다.

외국 출원인들은 특히 지정기간 엄수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그 지정 기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이유를 설명하고 소련상공회의소에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통상 기간연장은 2개월간을 허용하며 기간연장신청 관납료금은 25루블이다.<♣>

소득은 정당하게
소비는 알뜰하게